

건설·환경연구소 규정

□ 제정 : 2000. 3. 10.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수원과학대학교 부설 건설·환경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영문으로는 Construction Environment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이하 “CETRI”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건축, 건축설비, 토목, 환경 분야의 학문연구를 심화하고 발전하는 건설·환경 산업 분야에 부응하는 건설 기술 및 정책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산학 협동 연구 체제를 공고히 하여 수원과학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 활성화, 경쟁력 강화 및 교육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연구소는 본교 내에 둔다.

제4조(연구원) 본 연구소의 연구원은 본교의 건축, 건축설비, 토목, 환경 분야의 전임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단, 본 연구소에서는 특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초빙된 전문가는 위촉 연구 교수(조교수급, 부교수급, 교수급) 또는 연구원으로 임용되고, 수행하는 연구 과제 만료 시 임용 계약이 만료된다.

제5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축, 건축설비, 토목, 환경 분야에 긴요한 기술 및 정책에 관한 조사, 실험 및 연구와 이에 관련된 기초 및 응용 과학의 연구
2. 외부로부터 위탁된 과제의 검토 및 연구용역
3. 건설·환경 분야의 산업체에 관련 기술지도, 기술교류 및 연구조성을 위한 산학협동 추진
4. 산업체 기술자들에 대한 기술(재)교육 및 연수지원
5.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계 연구 활동을 수행
6. 건설 산업 발전에 관한 홍보, 도서 간행 및 관계 문헌의 수집을 수행하며, 연구 업적에 대한 종합 학술지를 발간
7. 기타 본 연구소의 연구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기 구

제6조(기구) 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소 장 1명
2. 운영위원 4명
3. 위촉 연구 교수 약간명(연구 조교수, 연구 부교수, 연구 교수)
4. 위촉 연구원 약간명
5. 사무원 1명 (계약직)

제7조(소장)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소장은 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제8조(운영위원) ① 운영 위원은 본교 건설·환경계열 (건축, 건축설비, 토목, 환경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각 분야 추천에 의해 소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연구실 및 센터) 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구실, 센터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제10조(위촉연구교수 및 위촉연구원)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경력이 적은 자는 위촉 연구원으로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② 위촉 연구교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로 특정 연구수행의 전문가로서 경력에 따라 연구 조교수, 연구 부교수, 연구 교수로 구분한다. 위촉 연구교수는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단, 수행하는 연구과제 만료와 동시에 임용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제11조(사무원) 연구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소장은 사무원을 임명 및 해임할 수 있다.

제 3 장 운영 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이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의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고 잠정기간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①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frac{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사항) 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연구소의 연구활동 및 사업계획에 관한 계획과 결과
3. 연구소의 예산심의와 결산
4. 연구 사무의 평가와 집행예산의 조정
5. 연구실의 설치 및 폐지
6.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연구진행) ① 연구소장은 연구원의 연구 진행상태를 수시로 파악한다.

② 연구원은 연구계획서에 의거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수행에 대한 제반 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연구과제변경) 책임연구원은 연구수행 중 위탁자의 요구 또는 해당 연구실의 사정에 따라 연구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보고서 제출) 책임연구원은 연구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중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중 2부는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9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총당한다.

1. 교외 연구비
2. 찬조금과 기타 보조금
3. 본교의 연구 지원비 및 운영 지원비

제20조(연구비, 운영비) ① 연구소의 명의로 수령한 모든 연구비 및 기타 모든 수입금은 연구소 명의기금으로 은행에 예치한 후 연구비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연구비를 수령한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비 총수령액의 10%를 연구소 운영비로 제공하여야 한다.

7-2-1 건설·환경연구소 규정

③ 연구소장은 연구소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운영 위원회에서 매 학기말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예산, 결산) ① 연구소의 예산 편성은 대학의 회계년도에 따르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연구소의 예산의 편성과 결산 및 집행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소장이 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0. 3. 10. 일부터 시행한다.